

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517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1999년 12월 24일

제안자 : 총무보사위원회
위원장 황의형

1. 수정이유

-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관사운영 경비의 부담조항에서 보일러 운영 경비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정과 부합되게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관사운영 경비중 보일러 운영비가 현재 3급 관사의 경우 지급되지 않는 바, 보일러 운영비를 1급·2급 관사에 한하여 예산에서 지출토록 수정함. (현행 제56조)

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대한수정안

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현행 조례 제56조제3호중 내서된 “1급 내지 3급 관사”를 “1급·2급 관사”로 수정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	개	수
제56조(관사운영비의 부담) (생 략) 1~2 (생 략) 3. 보일러 운영비 (다만, <u>1급 내지 3급</u> <u>관사</u>에 한함) 4~8 (생 략)	제56조(관사운영비의 부담) (현행과 같음) 1~8 (현행과 같음)	제56조(관사운영비의 부담) (현행과 같음) 1~2 (현행과 같음) 3. (....., <u>1급·2급</u> <u>관사</u>.....) 4~8 (현행과 같음)